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박기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4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7일

발 의 자 : 박기열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권영희, 김경영,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
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
송정빈, 신정호, 양민규,
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
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
장인홍, 전병주, 전석기,
최 선, 최웅식, 한기영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음.
- 본 조례의 별지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(제1호), 의원상해등보상금 청구심의결과통보서(제2호)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.

- 세종 등 11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실무적으로 생년월일로 대체하여도 업무상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해당 의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하고 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 함. (별지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<별지 제1호서식>					<별지 제1호서식>				
----	----	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		----	----	----	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		----
----	----		<u>주민등록번호</u>		----	----		<u>생년월일</u>	
	----		<u>주민등록번호</u>			----		<u>생년월일</u>	
	----			----		----			----
	----					----			
	----					----			
<별지 제2호서식>					<별지 제2호서식>				
----	----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		----	----	----	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		----
----	----		<u>주민등록번호</u>		----	----		<u>생년월일</u>	